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2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학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역 내 산업체 인력난 심화 등 지역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교육기관의 분산된 역량 결집을 통한 위기 극복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오산시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평생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지원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관학협력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문서 교환으로 성립하고, 관학

협력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은 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관학협력 사업의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관학협력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3월 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655호
----------	---------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의의원 : 장인수 의원

찬성의원 :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학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역 내 산업체 인력난 심화 등 지역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교육기관의 분산된 역량 결집을 통한 위기 극복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오산시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평생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지원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관학협력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문서 교환으로 성립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시장은 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관학협력 사업의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관학협력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오산시 관내에 위치한 오산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또는 오산시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관학협력”이란 오산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 ① 관학협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및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사업 운영
5. 그 밖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학협력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협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관학협력으로 본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